

부정수급관련 제재 처벌강화

부정수급이란?

지방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
(지방보조금법 제34조 등)



부정수급 관련 제재

최소결정

반환명령

이자포함
반환절차

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명단공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

-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승인없이** 매매 및 담보 제공
- ◆ 지방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사업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
- ◆ 해당 보조사업(지방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등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법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법률센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종합법률센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종합법률센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국가종합법률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법률센터)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검색

(21.12월 말 오픈예정)~!



지방보조금제도 운영안내

지방보조금의 올바른 사용이
청렴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슬기로운

지방보조금 사용법



지방재정
살림꾼은
바로
당신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매칭되어 있다면?

국고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보조금법 제2조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지방보조금법 제2조

국고보조사업!

지방보조금
가즈아



① 순수 지방보조사업

» 지방보조금 법령 등 **관련 기준 적용**

② 국고보조사업(국고보조금 + 지방보조금)

» 보조금법과 지방보조법을 동시에 적용 받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법규 적용에 관한 **일관성 있는 방침**을 받아 집행하여야 함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8조)

지방보조금 정산, 똑똑한 실적보고

-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폐지 승인·회계연도 종료 후 실적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 ◆ 일정규모이상(3억) 실적보고서 외 검증보고서 제출
- ◆ 특정보조사업자(10억 교부) 실적보고서 외 감사보고서 제출

특정보조사업자

내가 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이네?!
서두르자
감사보고서!!

검증대상사업

내 사업은
지방보조금만
총액 3억 이상이네,
실적보고서
검증받자!



감사인

교부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선정

계약

1개월 이내 체결 후 지방자치단체장에 통지

작성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 후 제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중요재산 관리요령

(지방보조금법 제21조 등)

중요재산이란?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등 특수 동산,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재산

부기등기

(지방보조금법 제22조)

중요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부기등기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

- ◆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 ◆ 항공기 10년
- ◆ 그 밖의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 5년

중요재산 처분제한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제한기간 내 교부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어담보의 제공 불가
(사업담당자에게 처분제한기간 반드시 확인)

사후 보고

-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중요재산 현황 작성
- ◆ 처분 제한 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 변동현황 보고